

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952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1. .
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1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규정 (안 제3조)
- 나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례회 운영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·수정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(안 제4조)
- 다. 인용조문 변경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생략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부서협의
 - 가) 협의기간 : 해당없음
 - 나) 협의결과 :
 - 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정례회의 집회일”을 “그 날”로, “그 다음날”을 “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5조”를 “법 제5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134조”를 “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회기) ① (생략)</p> <p><u>②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집회) ①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<u>그 다음날</u> 집회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임시회 집회일은 <u>법 제45조</u>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5조(심의안건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1조제1항</u>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<u>법 제134조</u>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27조</u>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집회) ① <u>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. ---- 그 날-----</u> <u>----- 관공서의</u> <u>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-----</u> <u>-----.</u>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법 제54조</u>----- <u>-----.</u></p> <p>제5조(심의안건) ①----- <u>-- 법 제49조제1항-----</u> <u>----- 법 제150조-----</u> <u>-----.</u></p> <p>②----- <u>법 제142조</u>----- <u>-----.</u></p>